

웅지세무대학교	동아리운영규정	문서번호	5-2-09(E)-0
		제정일자	05.03.23
		최근개정	15.04.01
		주관부서	학생처
		홈페이지공개	총학생회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이하 '본 대학'라 한다) 총학생회에 속하는 자치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제2조(자격 및 범위) 본 대학의 모든 동아리와 그 구성원은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동아리의 가입은 1인 1개 동아리로 한다. 단, 동아리에 고문 등의 자격으로 입회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아리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학생회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설립목적과 활동이 타 동아리와 중복 되어선 안된다.
4. 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승인) 동아리를 결성(신규, 재등록 포함)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정한 신청기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초 교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1.>

제5조(등록 시 구비서류) 동아리를 결성,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학생 동아리 승인신청서 1부. [동아리규정 서식 제1호]
2. 가입예정회원 명부 1부. [동아리규정 서식 제2호]
3. 연간활동 계획 1부. [동아리규정 서식 제3호]
4. 지도교수 승락서 1부. [동아리규정 서식 제4호]
5. 동아리 서약서 1부. [동아리규정 서식 제5호]
6. 예산 계획서. [동아리규정 서식 제6호]
7. 동아리 회칙 1부.

제6조(지도교수) ① 동아리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동아리 회원에 의하여 추대되며, 동아리의 원활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지도교수는 1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 지

도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 지도교수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제7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4.01.>

1.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동아리의 활동이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처장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8조(책임준수) 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이 진다.

② 동아리실에서는 전열기의 사용, 고성방가와 소음, 음주 및 취침행위, 낙서 등을 금하며,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업시간에는 일체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동아리실은 본교 재학생 이외의 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교학처에서 허가를 득한 자는 예외로 하며 외부 출입자 명단은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1.>

⑤ 허가 없이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05.03.23.>

이규정은 2005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7.01.01.>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5.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4조 "학생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매학기 초 학생처"를 "매학기 초 교학처"로 개정하다
2. 제7조 "학생지도위원회"를 "학생위원회"로 개정하다
3. 제8조제4항 "학생처"를 "교학처"로 개정하다

[서식 제1호]

동아리 승인 신청서

동 아 리 명				
결 성 (예 정) 년 월 일		년 월 일		
대표자	학 과		학 번	
	성 명		핸드폰번호	
회 원 예 정 수		명 (남 : 명, 여 : 명)		
목 적				
타 교 또는 사 회 단체와의 관 계				
지 도 교 수	학 과		성 명	

위 학생은 웅지세무대학 동아리 승인신청 대표로서, 설립승인을 받고자 첨부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가입예정회원 명부 1부.
 2.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3. 지도교수 승락서 1부.
 4. 동아리 회칙.
 5. 서약서 1부.
 6. 예산계획서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지도교수 : (서명)

[서식 제2호]

가입(예 정)회원명단(- 학기)

작성일 : 년 월 일

일련 번호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직전학기 성 적	핸드폰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간활동계획서(- 학기)

[illegible]

[서식 제4호]

지도교수승락서(- 학기)

동아리 명칭	
지도교수 승락사유	

상기 동아리단체의 지도교수로서 동아리의 운영과 각종 행사를 지도하고, 대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아리 결성을 승락합니다.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학 과

성 명

(서명)

[서식 제5호]

서 약 서

본 동아리는 등록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 위반 시에는 동아리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동아리 등록 자체를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아리 명 :

동아리대표 : (서명)

예산계획서(- 학기)

지 도 교 수 : (서명)